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1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 9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1. 9.(월)	담당부서	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
담당과장	우성훈 팀장 (044-203-4068)	담 당 자	김예은 사무관(044-203-4069)

첨단산업·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 강화

개정 유턴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시행(11월10일, 화)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, 이하 산업부)는 **'하반기 경제정책방향**(6.1)'과 **'소부장 2.0전략**(7.9)'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**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유턴법) **시행령·시행규칙**을 **개정**하고 **11.10일**부터 **시행**한다.

〈 주요 개정내용 〉

□ 개정된 **유턴법 시행령·시행규칙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(**연구시설**) **연구개발(R&D)센터 등 연구시설**의 유턴이 가능해진다.

○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**기업부설연구소**의 **신설·증설 변경 신고***를 통해 국내사업장 **신·증설 인정**이 **가능**하다(시행령 3조).
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(과기부)」 시행규칙 별지제5호 참고
(**신설 요건**) 인(人):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, 물(物) :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
(**증설 변경 요건**) 인(人) : 연구개발인력 증원 등, 물(物) : 연구공간 증설 등

○ 또한, **해외사업장 축소 기준**으로 **'경상연구개발비'를 신설하고**, **해외 연구시설 규모**에 따라 **해외사업장 축소 비율**을 **차등***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**완화**한다(시행규칙 3조).

* 경상연구개발비 규모(해외사업장 축소 비율) : 0~50억원(25%↑), 50억원~100억원(20%↑), 100억원~1000억원(15%↑), 1000억원 이상(10%↑)

❷ (**요건완화**) **해외-국내 생산제품·서비스 동일성 요건** 및 **해외사업장 축소 지표** 등 **유턴기업 인정 요건**을 **완화**한다.

○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-국내 생산제품·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**소분류**(3단위)상 **일치**하여야 했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**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***에서 **소재·부품·공정 등의 유사성** 등을 심의하여 **동일성**을 **인정**할 수 있게 된다(시행령 3조).

* 산업부 장관(위원장), 기재부·고용부 등 관계부처, 지자체장,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(유턴법 제6조)

○ 또한, **해외사업장 축소 지표**를 "**매출액**", "**경상연구개발비**", "**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**" 으로 **다양화**하여 **기업**의 **해외 사업장 축소** 관련 **입증 부담**을 **완화**하였다(시행규칙 서식).

❸ (**보조금**) **자금 지원 대상 지역**을 **기존 비수도권**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**전국**으로 **확대**한다(시행령 11조). 이를 통해 **첨단업종***에 한정하여 **수도권에도 보조금**을 **지급**한다(유턴보조금 고시, 11.10 개정 완료).

* 「산업발전법」 상 첨단기술 및 제품(제조업 및 서비스업) 등

〈 금년 성과 및 향후 계획 〉

□ (**금년 실적**)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**케이(K)방역**의 **성공**과 **유턴보조금 신설**(3차 추경) 및 **지원 확대**, **지능형공장 지원 강화** 등 **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**에 힘입어,

○ 11월 현재 전년 실적(16개사)을 넘어서는 **총 21개*** **기업**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, 특히 **자동차·화학** 등 **주력 업종** 및 **중견기업****
등 유턴이 증가하였다.

* 연도별 : ('14)20 → ('15)3 → ('16)12 → ('17)4 → ('18)9 → ('19)16 → **('20.11)21**

** 대·중견기업 유턴실적(개사) : ('14~'16) 2 → ('19) 4 → ('20.1~11월) 6

<금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>

	기존	금년
대상	• 제조업	• 제조업 + 지식서비스업·정보통신업 • 연구시설 인정요건 신설
인정요건	-	• 제품·서비스 동일성 인정기준 완화 • 유턴 신청기한(1년→2년), 국내 신·증설 기한(3년→5년) 등 각종 기한 연장
조세	• 국내 사업장 **신설** 기업에 7년 감면(5년 100% + 2년 50%) ※ 단, 해외사업장 50% 이상 감축 필요	• 국내 사업장 **증설** 기업에도 감면 • **최소 해외 감축 요건** (50% 이상) 폐지 → **해외사업장 감축량**에 **비례**해 **감면**
보조금	•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지급	• **유턴 보조금 신설** - 지방 **지원비율 상향 및 첨단산업·지역 집중유치업종** 등일 경우 **2% 가산, 지원 한도 확대**(100억원→300억원) - **첨단산업 한정 수도권**에도 보조금 **지급** (150억원 한도) - 최소 **상시고용여건**(現 20명이상) **폐지 →고용·투자액** 등으로 **지급비율 차등**
스마트공장	•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시 유턴기업 가점부여	• 스마트공장·로봇 패키지 지원(9억원)
시장 확보 지원		• 해외인증 지원 사업, 구매조건부 R&D,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에 유턴기업 우대
고용보조금	• 2년간 최대 720만원	• 고용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(유턴기업 선정 후 3년→5년)

□ (**향후 계획**) 산업부는 현재 **상임위**에 **상정**되어 있는 **유턴법 개정안***의 국회 논의를 통해 **첨단산업·공급망 핵심품목** 등에 **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, 수요연계형(협력형) 유턴**에 대한 **추가 지원,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** 등 **추가적인 제도 개선**을 **실시**할 계획이다.

* 고민정 의원, 어기구 의원, 박광온 의원, 구자근 의원 등 발의

□ 또한,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고, **첨단투자지구** 등 **맞춤형 특전**을 제공하여 **수요연계형** 유턴 등 **경제적 파급효과**가 **큰 유턴 유치**를 **적극 추진**할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 김예은 사무관(☎ 044-203-4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업장의 신설·증설 등)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·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.	제3조(사업장의 신설·증설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1. 해외진출기업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	1. ----------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이 조에서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--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기존의 공장을 매입·임대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(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)을 갖추는 경우	다. ----------임차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<신 설>	2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(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)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	가.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
	나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
2. 해외진출기업이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	3. ----------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--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·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(이하 “제품등”이라 한다)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이 항에서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제품등이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(한	② ---------- --- 서비스(이하 “제품등”이라 한다)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)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해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<신 설>	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·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·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제9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)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9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1.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	1. ---------- ---------- 국내복귀기업이 ---------- ----------

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축소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	---------- -------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)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.	제11조(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전국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참고2 **유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)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.	제3조(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)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 1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(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)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: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(이하 이 항에서 “기준경상연구개발비”라 한다)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가.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: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

	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나.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: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다.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: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라.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2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	

	하고 있는 경우: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·서비스의 생산량(이하 이 조에서 “매출액등”이라 한다)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
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생산량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산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----------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---.